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0. 6. 18(목) 10:00

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 
폐지조례안  
(경제환경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97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## 2. 제안이유

승용차요일제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 빈발과 가입 혜택 축소에 따른 제도 실효성 미비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(2020. 1. 9.) 됨에 따라 시스템 및 혜택이 유예기간(2020. 1. 9. ~ 7. 8.) 이후 종료될 예정이므로, 우리 구 조례도 폐지하고자 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7조의2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 : 2020. 4. 23. ~ 2020. 5. 14.(20일 이상)
  - 2) 규제사전심사 : 별도시행(기획예산과)
  - 3) 부패영향평가 : 별도시행(민원감사담당관)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별도시행(여성가족과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현행 조례 개요

동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」는 2005년 7월 11일 제정된 이후 2007년 2월 일부개정 되어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, 승용차요일제의 확산·정착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총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폐지조례안의 제안 배경

-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고 있지만,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승용차요일제 미이행, 위반차량의 단속 한계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
- 이와 관련한 승용차마일리지는 가입회원에게 운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음.
-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 효과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다. 검토의견

- 승용차요일제 제도의 실효성 미비와 서울시의 해당 조례 폐지에 따른 우리 구 조례의 폐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, 승용차요일제를 즉시 폐지하여 혜택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# 관 계 법 령

## 대기환경보전법

**제77조의2(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)**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(온실가스를 포함한다)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(이하 "친환경운전"이라 한다)이 널리 확산·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2.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
3.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
4.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·운영
5.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·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.